

**풍자그림에 의하여서도 당연적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한 사례**  
**Nieman-Marcus v. Lait 13 F. R. D.311 (미연방 지방법원 뉴욕남부지원 판결.1952)**

**사실개요**

피고 신문사는 신문기사에서 점쟁이들을 취급하였는데, 원고 불러와 원고 롤단은 그 중 이름까지 지명하여 다뤄진 점쟁이들 중의 일부이다.

원고 불러에 관하여 그 기사는 「그녀의 상담료는 현찰로 20 달러」라는 내용과 함께 일반적으로 점쟁이들은 「상담료를 현찰로 받고 세무당국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알 길이 없다」는 보도를 한 외에 풍자그림으로 원고 불러가 고객들이 당황하는 가운데 괴이한 옷을 입고 침대에 걸터앉아 각종 기괴한 도표 속에서 점을 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원고 롤만에 관하여는 그가 마법사라고 표현하였다. 원고들은 모두 피고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모두 피고의 신문기사 및 그림이 「당연적 명예훼손」(libel per se)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 심은 원고들의 청구가 청구원인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인 각하신청을 받아들여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 항소하자, 항소심은 원고 불러에 관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으나 원고 롤단에 관하여는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판결요지**

1. 사람의 직업이나 사업에 손해를 가하는 내용의 서면에 의한 공표는 당연적 명예훼손을 구성하는데, 이 경우 그 발표내용은 그 사람이 그 직업에 관한 지식이나 능력 또는 기술이 부족하고, 사기성, 불성상성, 비행성 등이 있다고 뒤집어씌우는 것이어야 한다.
2. 그림이라 하더라도 기사본문과 더불어 가시적인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그림이 묘사하고 있는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헌법상 보호되는 의견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판결이유**

**켈리판사의 견해**

원고들인 패트리샤 C. 불러(Buller)와 로베르토 롤만단(Roldan)은 원고들의 청구가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원인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해달라는 피고들의 신청 (motion to dismiss)을 받아들인 세인트루이스시 순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청구원인을 밝혔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재된 모든 사실이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를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공동으로 5 개의 청구를 하고 있다.

첫 3 개의 청구는 원고 불러의 ① 명예훼손, ② 사업상의 기대에 대한 고의적 방해 및 ③ 사생활침해를 원인으로 한 청구이다. 원고 롤단의 청구는 ④ 명예훼손과 ⑤ 사생활침해를

원인으로 한 것이다. 퓨리처출판사와 그 기자 중의 1 명인 플로렌스 싱클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송은 세인트루이스 포스트디스패치신문 1982년 12월 26일 일요일판 일상난의 『미래가 앞에 놓였다』라는 제목하의 신문기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기사는 미래사를 예언해 주고 있는 점쟁이들을 다루었다. 원고들은 그 기사에서 이름까지 지명해서 길게 다뤘던 5명의 점쟁이들 중의 2명이었다.

피고의 기사에서는 원고 불러가 점치는 일이 자세히 묘사되었는데, 그녀(원고)는 그 기사에 딸린 그림에 의하여 조롱을 당하였고, 그녀가 탈세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묘사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 룰단은 그 기사에서 「마법사」(voodoo practioner)라고 묘사되었다.

청구 ①과 ④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 불러는 첫째의 청구에서 우선 피고들과 신문 기사를 특정한 다음, 그 복사물을 「증거 A」로 첨부하면서, 그 기사는 피고들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명예훼손적 서술이나 풍자, 기타 거짓 내용을 담음으로써 명백히 그러나 다른 점쟁이들을 조롱하기 위하여 쓰여졌고, 그녀는 수년전부터 지금까지 돈받고 점쳐주는 일에 종사해 오면서 주로 타인의 평판이나 추천에 의하여 알려지고 있는데, 그 기사에 딸린 만화는 고의적일 뿐만 아니라 허위적으로 그녀의 직업에 관한 그녀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그녀를 일반대중에게 괴짜 및 탈세자로 비쳐지도록 의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녀는 풍자에 의하여 자신을 탈세자로 규정하였다는 말들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불러의 상담료는 한번에 현찰로 20 달러」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그 직종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대가가 현찰로 지급되고, 기록되지도 않으며, 세무당국에서 영원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돈벌이가 잘되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그녀는 더 나아가 그녀가 옷자락에 도표가 달려있는 우스꽝스러운 옷을 걸치고 침대에 걸터앉아 점치고 있는 듯이 묘사한 만화와 「요술」, 「괴이한 의상」, 「수정구슬」 등의 용어로 인하여 마치 그녀가 고객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오직 돈벌이만을 목적으로 무슨 작업장에서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같이 허위로 표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이로 인한 직접적 결과로 그녀의 인격, 명성 및 사업에 해가 갔고, 사회에서의 평판이 떨어졌으며, 야바위꾼이자 탈세자로서의 거짓된 혐의를 받게 되었고, 한편 피고들은 그녀의 평판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위 기사나 만화내용들이 허위임을 알면서 또한 진실을 무분별하게 무시하고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보상적 손해배상으로 200 만달러, 징벌적 손해로서 400 만달러를 청구하였다.

원고 룰단의 청구 ④는 원고 불러가 지적한 피고들과 문제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다음, 그 기사는 그를 「마법사」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묘사는 허위이고, 피고들도 이의 허위성을 알면서, 또한 진실을 무분별하게 무시하고 이를 보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현인적 손해배상으로 100 만달러를 청구하였다.

외부적 사실을 참조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에의 한 공연한 말들은 당연적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제소할 수 있다.

미주리법에 의할 때, 일정한 형태의 문서에 의한 진술이 당연적 명예훼손을 구성한다.

그러한 당연적 명예훼손의 한 경우가 사람의 사업이나 직업에 해를 가하는 출판이다. 이러한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제소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독립된 판례법이다.

독립된 법률에 따르면 원고가 말에 의하여 그의 사업이 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말들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 능력 또는 적합성이 없다고 뒤집어 씌움으로써 직접적으로 그의 직업, 상거래, 사업이나 고용관계를 해치는 것이어야 한다. 그 말들은 또한 사기, 성실성의 결여 또는 비행을 뒤집어씌움으로써 거래에 관한 원고의 명성을 해치는 것이어야 한다

당연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되는 말들이 사실상 명예훼손적인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말들은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내용과 연관하여서 검토하여야 하고, 따라서 전내용을 증거로 소장에 첨부하는 것은 허용된다 말들이 당연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피고가 각하신청을 하면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법률문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원칙에 입각하여 이제 불러의 명예훼손 청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불러는 청구 ①에서 그녀가 점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들의 신문기사의 발표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그 직업에 관한 그녀의 평판이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법률상의 문제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그림과 신문기사가 그녀가 의무를 수행할 지식이나 기술, 능력 또는 적합성이 부족하고 또한 사기, 불성실 또는 비행을 뒤집어씌우는 것이어서, 당연적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다.

불러는 위 기사가 그녀의 상담료가 현찰로 지급된다고 기술하고 그 직종에서는 대부분의 지급이 현찰로 이루어지고 세무부국에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지목함으로써 그녀를 탈세자로 거짓되게 표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그 내용을 전체로써 읽어야 한다. 위 두 구절은 기사에 의하면 문맥에서는 우선 명예훼손적이 아니고, 다음으로 명예훼손적이라고 하더라도 불러의 직업에 반드시 사기성, 불성실 또는 비행을 뒤집어씌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불러를 탈세자로 표현하고 담지는 않다. 그 직종 내에서의 지급수단의 관행에 관한 기술은 불러를 지목하고 있지 않다. 불러가 현찰로 상담료를 받는다는 구절은 그 사실 이상의 아무런 의미도 없다. 불러가 그의 수익을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기사는 불러가 유명한 점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단순히 그녀의 상담료와 그 지급방법을 기술하는 것은 그녀가 유명하다는 기술에 부합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되는 문장은 평범하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통상적인 뜻이 도출되어야 한다.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되는 말들은 그것이 전달되기를 예상하고 의도했던 독자들의 생각에 따른 자연스러운 의미에 의하여 공정히 해석되어야 한다.」 우리는 위 두 구절을 그 기사의 문맥에서 무작정 끄집어내어 볼 때 아무런 명예훼손적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일반적인 독자는 불러의 상담료를 그녀의 명성과 연관하여서 생각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구절들이 명예훼손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사기성이나 불성실성 또는 비행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아니다. 불러는 탈세자이면서도 유능하고 믿음직한 점쟁이일 수도 있고, 그녀의 소득세 신고는 유능한 점쟁이로서의 능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법원이 오래 전부터 판시해 온 바와 같이 이 구별은 중요한 것이다. 비행이라고 주장되는 것이 공표되더라도 그것이 본질상 불러의 점치는 능력에 무슨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불러의 청구가 명예훼손상의 청구원인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위 그림과 기사가, 사업이나 직업에 관한 당연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한다.

피고들은 위 만화가 특정적으로 불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만화의 명예훼손적 내용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불러를 지칭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만화에 묘사된 「손님」이 한 말은 불러가 본 점을 저자가 요약해놓은 것이다. 만화에 묘사된 「점쟁이」는 불러가 본문기사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분명히 침실에 있고, 그 「점쟁이」는 기사내용과 똑같은 액수의 상담료를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본문인사에서 특정액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인용된 점쟁이는 불러 밖에 없다.

결정하여야 할 문제는 그 기사의 그림이 불러의 직업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적인 방법으로 그녀를 묘사하고 있느냐 여부이다. 기사에 나타난 정보에 근거한 그림은 불러를 괴이한 옷을 입고 침대에 걸터앉아 이해할 수 없는 도표 속에 둘러싸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자체가 불러의 점쟁이로써 능력이나 기술에 회의를 가지게 한다 「손님」의 얼굴의 혼동된 듯한, 심지어는 어리둥절한 듯한 표현은 이러한 인상을 더욱 짙게 한다 「손님」에게 알려진 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점쟁이」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 그림은 명백히 불러가 점쟁이로서 아무런 기술이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뒤집어씌우고 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당연적 명예훼손의 두번째 요건도 갖추고 있다. 즉 사기성, 불성실성 또는 비행성을 뒤집어씌우는 것이다. 그 그림은 불러를 무능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녀가 손님에 대해 쌀쌀하고 무감각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림에 그려진 점쟁이는 손님이 당황하는 것을 보고서도 상담료를 요구하면서 다음 손님을 부르고 있다. 그 그림에 따르자면, 불러는 그녀의 손님에 대하여 성실성을 전혀 가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아무 쓸모없을 점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피고들의 만화가 위 기사에 나타난 정보를 토대로 오직 불러의 직업과 그녀의 능력 및 성실성의 결여에 초점을 맞춘 그림을 교활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들은 위 기사와 그림이 당연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데 아무런 의심이 없다.

남은 유일한 쟁점은 이와 같은 명예훼손적인 공표가 미국연방헌법 수정제 1 조와 미주리 주헌법 제 8 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견의 진술로서 보호되느냐 여부이다.

헌법원칙에 따르면, 공무원이건, 공공인물이건, 사인이건 간에 보도매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피고가 허위사실을 발표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우리는 피고가 그 자신의 허위적이고도 명예훼손적인 사실에 근거 하여 원고에 대하여 경멸적인 의견을 표현한 경우에, 원고는 그의 의견때문이 아니라 사실에 관한 진술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시해 왔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우리들은 불러가 위 기사와 그림에 관한 피고들의 당연적 명예훼손책임을 성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본다. 위 그림은 불러를 그린 것이고, 또한 허위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불러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불러는 그의 청구에서 자신이 그림에서 묘사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옷을 입거나 행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가 의견이 허위이건 아니건 간에 사실과 의견을 동시에 발표하는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의견을 형성케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어쨌든, 위 그림에 가시적으로 표현된 사실은 보호되는 의견의 범위를 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 심이 불러의 청구 ①이 청구원인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각하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한다.

다음으로, 자신을 「마법사」라고 한 피고들의 묘사로 인하여 인격과 명성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롤단의 명예훼손청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롤단은 그의 청구에서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쟁점은 위와 같은 특정 문구가 롤단의 명예를 그의 직업에 관하여서가 아니라 그 개인에 관하여 훼손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연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 말들은 롤단의 성실성, 인격 및 사회에서의 평판과 지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마법사」라는 말만으로는 무슨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말은 무신론과 사악함을 내포할 수 있는 반면, 동시에 무슨 신비한 힘이나 특별한 능력을 내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의 뜻은 모호하다.

한편 당연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말들에 대하여도 구체적 명예훼손(libel per quod)에 기한 청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들이 당연적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명예훼손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질적 사실들을 반드시 밝혀야 하고, 또한 이 주에서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청구원인에서는 특별한 손해의 발생이 주장되어야만 한다. 롤단은 아무런 부대적 사실이나 특별한 손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1 심이 롤단의 청구가 청구원인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신청을 받아들인 조치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시한다. (청구 ②, ③, ⑤에 대해서는 번역을 생략함)